[1987 기획토론]

작업환경측정, 과거의 고민은 어떠했을까?

월간 「산업보건」 400호를 맞이하여 1987년도에는 전문가들이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뒤돌아 보고자 합니다. 토론의 전문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kiha21.or.kr) 월간 「산업보건」 1988년 4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본고는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자 맞춤법 및 소속을 1988년도 4월호와 같이 하였습니다.)

정리 편집실

작업환경측정,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기획토론 일시 : 1987년 11월 23일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국 회의실
사　회 : 이광묵(가톨릭의대 교수)
토론자 : (가나다순)
노재훈(연세의대 교수)
백남원 (서울보건대학원 교수)
염용태(고려의대 교수)
이경남(노동부 산업보건과)
이병국(가톨릭 의대 교수)
이은영(대한산업보건협회 중앙산업보건센타 산업위생과장)
이정환(국립노동과학연구소 산업보건연구담담관)

이광묵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중에도 이런 자리를 갖게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작업환경측정제도가 도입 시행되어 오고 있읍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의 개선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업환경측정제도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그간 관계기관이나 보건진단전문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었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노·사·정 모든 참여하에서만 원만히 해결되어 나가고 개선되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이 과연 그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또 이를 위한 기술, 인력, 제도면에서는 어떻게 진행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또 외국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정립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에서 각기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이은영 작업환경측정 실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선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제도적인 면이나 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환 오늘의 주제가 작업환경실태 파악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의 개선에 관한 것이니 먼저 그 동안에 실시해왔던 작업환경측정 실태에서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감으로서 앞으로 잘 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경남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근로기준법에는 작업환경측정제도가 없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생기면서 이 법에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들어간 것으로 현재 4년째 그 법령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측정을 해야하는 사업주들이 반드시 측정을 해야겠다는, 다시 말해서 법을 준수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왜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가 하는 등에 대한 홍보계몽도 미흡하고, 또 그것을 4년동안 담당해오고 있는 보건진단기관이나 측정기관의 작업능력, 측정결과도 미흡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자체도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점이 있읍니다. 그리고 측정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활용하는데에도 사업주의 인식부족 때문에 환경관리와 연결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년 1회 또는 2회 사업주가 실시케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의 실태는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가 왜 우리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가, 또 이것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외국의 경우는 이 제도를 어떻게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작업환경측정이 환경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은영 요즘 실제로 노조 등에서 측정에 관한 문의도 해오고 있고 또 이것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보다는 유해수당이라는 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장 유해부서에 대한 판정의 기준을 위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할 겁니다.

이경남 그 점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로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각 유해한 업무에 대한 적용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점은 앞으로 근로기준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은영 이 점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해부서 문제가 자꾸 나올 것 같고 실제로 노사분규 후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태이고 당장 문제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광묵 그래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작업장의 유해부서에 대한 판정에 따른 유권해석이 정립되어야 할 겁니다. 이 계장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배경과 측정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이경남 작업환경측정은 과거 근로기준법으로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를 할 당시는 없던 제도인데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인해서 새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 제도의 개요는 사업장의 유해부서, 예를 들어 소음, 화학물질, 분진, 유기용제 사업장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3년간 보존하게 하는 제도이죠.

이광묵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실제로 경험에 의한 문제점,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이은영 우선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부터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설득하는 추세이고 보니 측정하는 사업장은 계속 실시하게 되는데 안하는 곳은 계속 안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사업장간에 측정회피 현상이 파급되어 작업환경측정실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측정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현재 회사규모나 업종에 따라 계상과정에 다소 조정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근로복지공사 같은 곳은 측정회수와 측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하는 수없이 측정회수를 줄임으로서 조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측정 자체에서 측정항목의 누락 등 미비한 점이 많아지게 되고 단가를 조절하기 위하여 측정방법이 조절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광묵 그러면 여기서 백 선생님께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해주시겠읍니까?

백남원 네, 미국은 산업위생이 제일 발달된 나라이고 많이 정착이 되어 있읍니다. 현재는 유해부서 수당이라는 말은 없어진 단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이 확실치가 않아요. 대개 측정의 목적을 3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 근로자의 폭로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 둘째 환경개선의 효과 측정, 셋째 법적인 허용기준을 초과했느냐 또는 안했느냐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허용기준 초과가 전체 측정 중의 얼마를 차지한다하는 수치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세 번째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시험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비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직독법인 상대농도에 의한 측정결과가 인정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여과법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또 공정시험법마다 오차와 통계적인 방법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15분 정도의 단시간 시료채취는 7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8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 7시간을 측정을 해야 통계적으로 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밝힐 수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통계적인 방법과 공정시험법을 만들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환 저희 연구소의 나름대로 노력해서 많이 향상되었으나 앞으로 노과연 확대 문제가 상당히 검토가 될 것이고 자체확대가 안 되거나 곤란한 경우 산업안전공단에 흡수시켜 활성화를 기해보자는 의견도 있어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노과연 자체문제는 인력문제인데 설립 당시부터 적정수준으로 인력을 확보하였다면 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이고 측정기관의 구심점이 되어 일을 해나와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면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연구소가 되었지 않겠나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광묵 지금까지 각계의 의견 중에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정부측 입장에서 볼때 어떤 것일까요.

이경남 지금까지 정부에서 운용해 오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가 능력이 없을 때는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허락하게 한다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의료기관의 지정 관계, 측정기관의 지정관계를 폭넓게 해서 여러 기관이 지정을 받도록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작업환경을 잘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점차 개발이 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또 가능해지도록 개선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광묵 오랜 시간동안 감사합니다. 앞으로 측정자 양성기관을 두어 교육학까지 포함하여 시험 주준 등을 결정해서 기술사 자격 등을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 산업장에서 작업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직접 관리는 못해도 남한테 의뢰해서 자료를 얻고 그 자료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는 시험만 치루고 있고 실제로 합격해도 산업위생사로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동부, 대학, 의료 기관 등 모든 곳이 관련이 되어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